

-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 「G밸리 테마역」 전시물 설치 및 장소 사용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내 「G밸리 테마역」 조성을 위한 전시물 설치 및 장소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G밸리 테마역」 내 G밸리 테마 전시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 사용에 있어 ‘서울시’와 ‘공사’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면적) (도면 별첨)

- ① 조성공간은 서울교통공사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B1층) 100.634m²로 한다.
- ② 조성공간의 위치 및 면적은 설치여건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사용기간)

- ① 장소사용기간은 2017.6.26. ~ 2018.7.5.(약 1년)으로 한다.
- ② 협약 만료 전 상호 합의를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

「G밸리 테마역」 조성 장소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5조 (용도 및 운영)

- ① ‘서울시’는 테마역 조성공간을 G밸리 홍보·전시 및 휴게 공간 용도로 사용하고 운영한다.
- ② ‘서울시’는 조성공간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체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 ③ ‘서울시’는 조성공간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단, 위탁운영은 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으로 하며, 위탁운영 협약서(계약서) 사본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서울시 또는 운영관리자’는 공사의 동의가 없는 한 조성공간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용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조성공간은 ‘공사’의 광고사업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 ⑥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공사’의 부대사업규정을 준수한다.

제6조 (관리비 및 청원전력 공급)

- ① '서울시 또는 운영관리자'는 수도요금 등 관리비가 발생할 경우 '공사'가 고지하는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기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간의 "도시철도 역구내 임차인 전기사용 등에 관한 협약서" 및 '공사'의 "청원전력공급규정"에 따른다.
- ② 전기사용 신청, 변경 및 해지는 '공사'의 확인을 받아 '서울시 또는 운영관리자'가 직접 한국전력공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

- 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을 위하여 이설 또는 철거 등이 필요한 시설물 (이하 '지장물'이라 한다.)의 처리 및 비용, 기타 설치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공사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서울시 또는 운영관리자'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②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공사'의 임대상가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설치한다.
- ③ 본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목적물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원상회복을 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양도 및 전대금지)

- ① '서울시 또는 운영관리자'는 협약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는 '서울시'에 통보 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화재예방 및 보험가입)

- ① '공사'는 화재 등 안전관리상 긴급한 경우에 '서울시 또는 운영관리자'에게 통보 없이 협약목적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 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서울시 또는 운영관리자'는 그 책임을 '공사'에 물을 수 없다.
- ② '서울시 또는 운영관리자'는 협약목적물 및 역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시설물 조성공사 착수 전까지 그 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화재보험 가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보험 가입금액 : 상가시설 화재로 인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위하여 장소사용 면적의 1m²당 8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대인·대물 배상책임 : 화재확산 시 대인·대물 손해배상
 - 장소사용 면적 100m² 미만인 경우 : 3억원 이상
 - 장소사용 면적 100m² 이상인 경우 : 5억원 이상
 3. 화재보험기간 : 시설물 조성공사 착수일부터 협약만료일 후 15일(명도일 지정기한)까지

제10조 (협약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공사’는 ‘서울시’에 통보 후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목적물을 공익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였을 경우
 2. ‘공사’의 역사 운영상 사용목적물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3. 협약목적물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4. 법령 및 ‘공사’의 제반규정 또는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공사’의 시정요구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5. 각종 관리비 등 기타 요금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 ② 전항 각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서울시’는 시설물을 즉시 원상회복하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공사’에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기타 준수사항)

- ① ‘서울시’ 또는 ‘운영관리자’ 및 그 종사원은 본 협약에 의한 운영을 함에 있어 ‘공사’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공사’가 고유업무 공공목적 또는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 제한 또는 변경,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울시’ 또는 ‘운영관리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③ ‘공사’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안전점검 및 시설물 확인 등을 위하여 시설물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서울시’는 협약목적물을 실로 구획하여 조성하는 경우, 화재 등에 대한 안전조치 예방에 대비하여 예비열쇠 1개를 해당역장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역장 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전열기, 냉동기, 프로판 가스 등을 무단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조문해석)

본 협약서에 약정한 조문의 해석과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는 본 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여 상호 성실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공사'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6. .

'서울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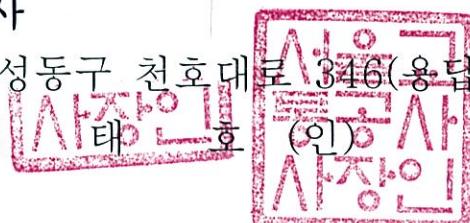
시 장 : 박 원



'공 사' :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4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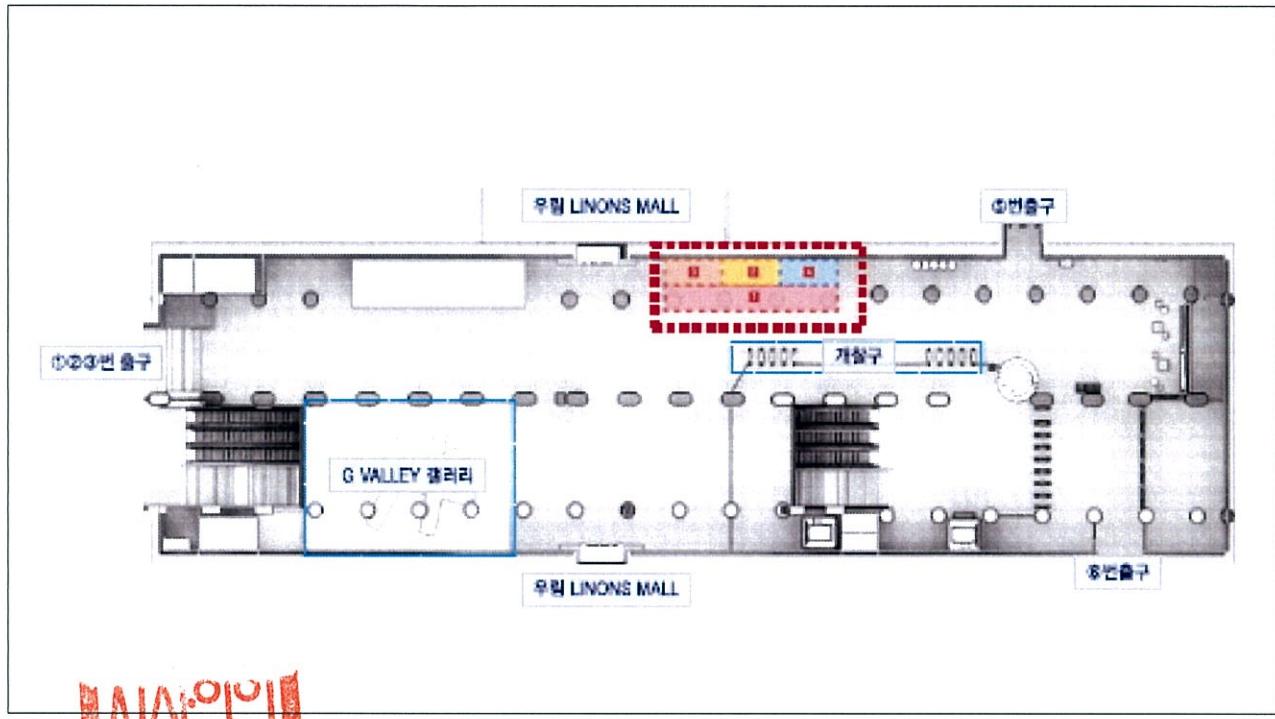
사 장 : 김 태



<별첨>

G밸리 테마역 조성 위치도

- ◆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지하 1층(100.634m^2)



시상의인